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의 안 번 호

2024. 04. 29. 주택공간위원회

I . 심사경과

- 1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4. 1. 허훈 의원 발의
- 2. 회부일자: 2024. 4. 8.
- 3. 상정 및 의결일자
- 제323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(2024. 4. 29. 상정·의결)

Ⅱ. 제안설명 요지 (허훈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아직 마을공동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마을공동체 관 런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마을공동체의 정의를 삭제함(안 제2조제1항제9호 삭제).
- 나.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이미 폐지된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조례」와 관련된 시설들을 삭제함(안 제44조제6호 삭제)

- 다.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 (안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삭제).
- 라. 마을공동체의 지도 · 감독 조항을 삭제함(안 제48조 삭제).

Ⅲ. 검토보고 요지 (오정균 수석전문위원)

○ 이 개정안은 `22년 12월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폐지1)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'마을공동체'용어를 정비(삭제)하려는 것으로 2024년 4월 1일 허훈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, 개정사항 중 특이사항은 없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V. 토론요지: 없음

Ⅵ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¹⁾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(의안번호 제11-275호)('22.12.30.)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.

제44조제6호를 삭제한다.

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한다. 제4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	제2조(정의) ①
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"마을공동체"란 「서울특별	<u><삭 제></u>
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	
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마	
을공동체를 말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4조(공동이용시설의 범위) 영	제44조(공동이용시설의 범위)
제37조제5호에서 "그 밖에 시ㆍ	
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	
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	
말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	<u><삭 제></u>
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른 마	
을배움터, 마을활력소 등 마을	
<u>공동체시설</u>	
제47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	제47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
면) ① (생 략)	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	②
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	
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2. 마을공동체</u>	<u><삭 제></u>

- 3. 제1항 목적의 달성을 위해 마 | <삭 제> 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 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
- 4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- 제48조(마을공동체의 지도・감독)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지원 경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지도 • 감독에 필요한 서류와 시

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· 검사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 령을 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 령을 할 경우 문서로 마을공동 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견진술 을 해야 한다.
- ④ 시장은 마을공동체가 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경비 환수 또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주체 변경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<삭 제>